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충역 등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10년→5년)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한편, 모바일 형태의 여권 명의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검·경찰 등) 요청에 따른 여권 무효처분과 같은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및 미비점 정비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여권 사무 개선

- 1)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제6조)
- 2) 여권 명의인에게 모바일 앱으로 본인의 신원정보(사진·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여 실물 여권 대신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44조의2)

나.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등 미비점 정비

- 1) 지문 제공 예외 대상에 지문 대조가 곤란한 유형(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추가 규정(제4조)
- 2) 범죄혐의자에 대한 여권 무효처분 관련, 관계기관장이 이러한 처분

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23조)

대통령령 제 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을“(지문 등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문을”을 “지문 등을”로, “지문과”를 “지문 등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 및 수령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3.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경우 신분증 제시, 안면 대조(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1호·제2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을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또는”으로, “제3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제1항”을 “제2항”으로, “거부·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제한 등”이라 한다)”을 “거부 또는 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사유, 거부·제한 기간이나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을 “요청사유와 거부·제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여권정보 모바일 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여권 명의인의 사진·한글성명·로마자성명·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정보증명서(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로마자성명·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여권(주민등록번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제4항의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확인한다) 또는 여권정보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② (생략)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 3.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④ (생략)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u>지문을</u>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u>지문과</u> 서로 대조할 수 있다. <u><신 설></u>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문 등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① ----- ----- <u>지문 등을</u> ----- ----- ----- <u>지문 등과</u> ----- -----.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 및 수령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3.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경우 신분증 제시, 안면 대조(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생략)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 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 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 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 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 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가. 삭제 나. 삭제	<삭 제>	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 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 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 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제8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3. 삭 제		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과 반납명령의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 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 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 제한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 ①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12조의2제1 항 각 호 또는 제2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제2 항제1호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현행 과 같음)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생 략)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삭 제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	③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 거부·제한 기간이나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을 통한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② -----

----- 요청사유와 거부·제한 기간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여권정보 모바일 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여권 명의인의 사진·한글성명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이하 “여권정보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로마자성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정보증명서(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 로마자성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여권(주민등록번호증명이 필요한 경우, 제4항의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확인한다) 또는 여권정보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여권과	
연 락 처	(02) 2002 - 0133